

한국공정거래협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강연회 개최

본 협회는 2월 27일 (금)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회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와 2004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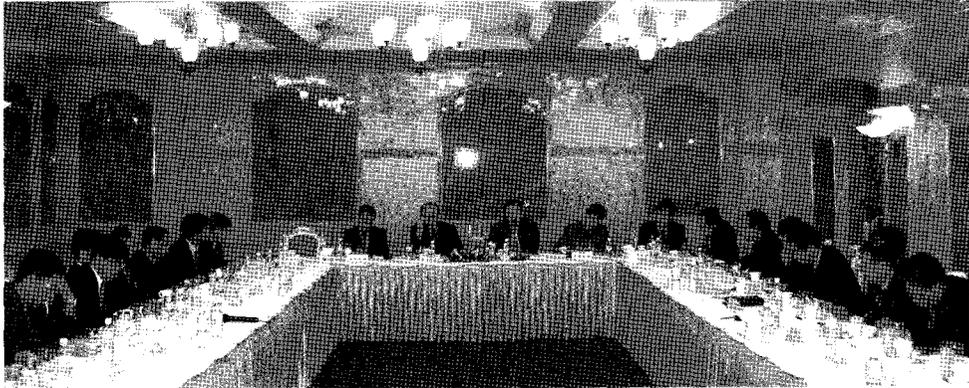
관개정(협회명칭 변경안), 임원 연임 및 변경의 건, 회원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정기총회 안건 중에서 현행 「한국공정거래협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회장 및 비상근 이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연임(안)과 비상근 감사의 선임(변경)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일반회원 중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회비를 다른 회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상조정하고 동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기총회 후 이어진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정책국장 초청 「2004년도 공정거래 정책방향」 강연회에서는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가격결정 등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각 산업분야별 경쟁제한적 제도 중 174개를 발굴하여 정비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동 제도들에 대해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카르텔 억지력을 제고할 예정이며, 지난해 담합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수를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카르텔 적발가능성을 제고한 바 있다.

자율준수관리자 포럼 개최



본 협회는 업계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활성화하고 경쟁당국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포럼(약칭 자율준수 포럼: CP Forum)을 지난 2월 12일(목)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정책국장은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이 나 범위반의 지속기간,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액을 가중, 감경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의 객관성을 높였으며, 과징금 부과시 3년간 전체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과징금 부담의 감소와 구체적인 위반사항의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보호정책과 산업별 시장구조의 개선으로 지속한 조사 접근방식을 시장의 동향과 제도를 파악하여 산업별로 사건처리시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률적인 직권조사 방식을 지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자율준수관리자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업종별 단체 또는 공정거래협회 등에서 먼저 시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협회는 매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조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행위(법 제23조)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본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중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대하여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언론재단)에서 개최하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개별행위유형별지침(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 패널들의 주요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토론패널

신광식 박사(사회,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이봉의 교수(경북대),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 용 회장(공정거래협회), 허 선 국장(공정위 경쟁국)

1. 전반적 평가

- 지침(안)은 그간 제기된 많은 이론적 논란에 대해 경쟁당국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집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임(정호열)
- 지침(안)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고 사건처리를 능률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작업으로 평가(김 용, 이봉의)
 - 공정위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기업들의 순응비용 (compliance cost)을 줄이고 사건처리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Win-Win 전략이 될 것임(김 용)
-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제23조)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윤세리)
 - 당분간 가지침(Temporary Regulation) 형태로 운영해 본 후 정식지침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이번의 지침제정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방안 까지도 검토하여 명실상부하게 세계적 수준의 공정거래법 집행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김 용, 이봉의)

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원칙 부분

- 지침(안)은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부당하게'의 경우 공정위에 입증책임이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의 경우 피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적 추세와 실무태도를 감안할 때, 두 경우 모두 공정위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김 용, 이봉의, 정호열)
- 지침(안)의 위법성 판단기준(경쟁제한성, 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피침해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사업자의 이익/일반공익/소비자이익 침해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정호열)

3.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

- 안전지대 설정은 지침(안)의 백미(Highlight)로 매우 좋은 발상이며, 공정위 인기를 일시에 만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김 용, 정호열, 신광식)
- 지침(안)에서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만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있으나, 모든 행위유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김 용, 정호열)
- 안전지대는 시장점유율(10%미만)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과 같은 양적 지표 외에 과거 심결 및 판례내용을 토대로 시장여건, 행위효과 등과 같은 주관적/질적 지표도 사용할 필요(정호열)

4. 관련 시장범위 확정

- 과거에는 시장범위 확정 등 경제분석이 등한시되었으나, 철저한 경제분석과 안전지대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서도 시장범위 확정은 중요한 의미(이상승)
- 지침(안)에서는 시장범위 확정을 위해 수요대체성을 위주로 하고 공급대체성을 보완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이상승)

5. 개별행위 위법성 심사요소

- 패널들은 지침(안) 세부내용에 대해 다양한 지적을 하였으며, 상당부분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

- (예) 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
 ② 부당염매 요건 중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이하'를 '평균가변비용 이하'로 수정
 ③ 부당염매 중 '일시적' 염매는 '1주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할 필요
 ④ 끼워팔기의 위법성 심사요소 중 '사업자의 시장지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지배력'으로 수정 등
-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와 관련하여,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유형 (white list)도 제시해 주면 예측가능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권오승)

이에 대하여 주요 기업들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율준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며, 안전시대 범위에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영업체를 포함시킬 것과, 부당염매 금액이 전체 매출액에 비해 미미할 경우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삼성전자), 예전에는 적법하던 행위가 심사지침 제정에 의해 위법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LG생활건강).

이번 공청회에는 본 협회 회원사의 자율준수관리자와 경쟁법학회 및 산업조직학회 회원, 기타 기업의 공정거래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안)을 한층 발전(Upgrade)시키기 위해 경쟁국내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 공정위가 제시한 개별행위유형별지침(안)의 주요내용

■ 거래거절

-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 소비자후생 침해정도 등 (예시)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가격, 거래조건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차별의 수준이 현저한지 여부, 가격차별의 효과(시장진입을 제한하는지 여부,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여부 등), 소비자후생 침해정도 등

(예시)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원재료를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가격수준이 원가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재료 구입가격이 정상적 가격수준보다 높은지 여부, 행위의 의도 등
(예시) 부당염매 : 규모의 경제 등의 이유로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시하거나, 위계에 의해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위법성 심사요소 : 제공되는 이익의 정도, 위계의 수단, 경품고시 위반 여부 등
(예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수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거래강제

-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위법성 심사요소 : 강제성 여부, 행위의 경쟁제한효과, 정상적인 거래관행과의 배치 여부
(예시) 끼워팔기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지위 남용

-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하는 행위
- 위법성 심사요소 : 거래상지위 보유 여부(대체거래선 유무 등), 부당성 여부(정상적 거래관행,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계약내용, 거래대상의 특성 등 고려)
(예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물건구입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수준, 유통경로 차단 효과, 상대방 구속의 정도, 제한행위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예시)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요소 : 행위의 목적 및 동기,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매출액 감소정도, 부도 발생 가능성 등)
(예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는 행위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제도』 설명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2월 23일(월)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회관에서 공정거래담당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회장 김 용, www.kfta.org)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제도』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 윤주선 사무관은 내부거래공시 대상회사의 공시제도 도입배경과 공시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상의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 등 실무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유권해석 예시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날 설명에서 윤 사무관은 공시제도 도입배경, 내부거래공시 대상회사 및 대규모내부거래의 의의와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내부거래공시 대상회사의 의무와 범위반시의 제재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권해석 및 예시와 질의응답 등 실무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였다.

제2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상 및 사례발표대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3월 5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이영재 부사장, 신세계건설(주) 노태욱 대표이사, 삼성카드(주) 김은미 상무 등 100여명의 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상 및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우수상에 신세계 백화점

부문(유통부문)과 신세계건설(제조·건설부문), 삼성카드(금융·보험부문)가 수상하였다. 우수상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CJ홈쇼핑, 대우종합기계 등 7개사가 수상하였다. 지난 3년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13개 기업으로부터 평가신청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법조계, 산업계 등 5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서면평가와 자율준수프로그램 설명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등을 거쳐 부문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하였다.

한편, 2부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우수상을 수상한 삼성카드와 신세계건설이 자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현황에 대하여 사례발표를 가졌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삼성카드 김은미 상무는 사내에 주리스 인트라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준법감시, 준법신문고, 법무도움방, 법령자료실 등을 통하여 사내 임직원이 법위반 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기업 임직원의 자율준수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외부전문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의 자율준수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건설 최용진 상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사례”라는 사례발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시 위법행위 부서(현장포함)의 성과급을 감액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불공정 행위 사례를 공지함으로써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홈페이지의 조회건수가 상반기 605건에서 하반기 4,100여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이후 법위반이 없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임직원의 자율준수의식을 정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